

—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이중으로 운영되던 “구미시에바란다” 와 “구미시전자민원창구” 의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통합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범위를 세분화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사이버민원실 명칭 변경
 - 사이버민원실 ⇒ 전자민원창구
-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범위 세분화
 - “특정 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” 추가

4. 참고사항

-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

5. 검토의견

-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에 의거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명칭을 변경하고,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범위를 세분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